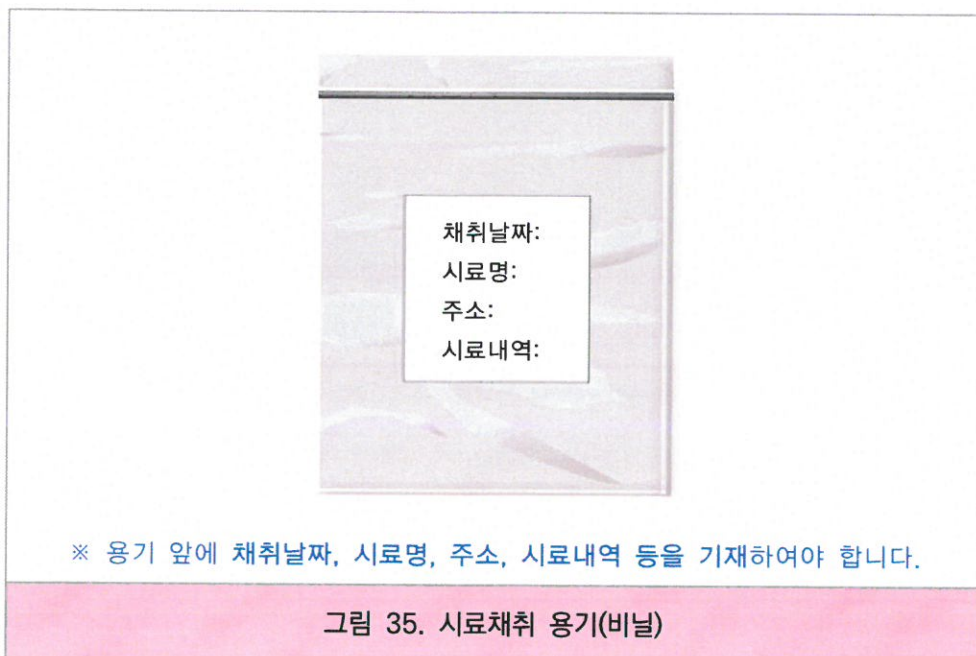


퇴비 시료 채취, 의뢰, 이송 및 기계분석

가. 퇴비시료 채취

1) 시료채취

- (용기) 분석 방해성분이 용출되지 않는 500g 이상의 유리병 또는 비닐봉지 등을 사용
- 용기 앞에 채취날짜, 시료명, 주소, 시료내역 등을 기재(그림 35)
- 퇴비 시료채취방법에 따라 시료채취 시 성분검사 채취확인서(별지 제1호 서식)를 작성 비치
- 시료채취 이후 시료와 퇴비 성분검사 위탁서(별지 제2호 서식)를 검사기관에 동봉
- 퇴비 검사기관으로부터 퇴비 성분검사 결과서(별지 제3호 서식)를 받은 경우 관련 서류와 같이 보관



2) 시료채취 방법 : 원추4분법

- 시료를 대표할 수 있는 5~10곳 이상 채취하여 깨끗한 깔판에 옮겨 균일하게 잘 혼합(그림 36)



- 원추4분법에 따라 최종 500g의 시료 채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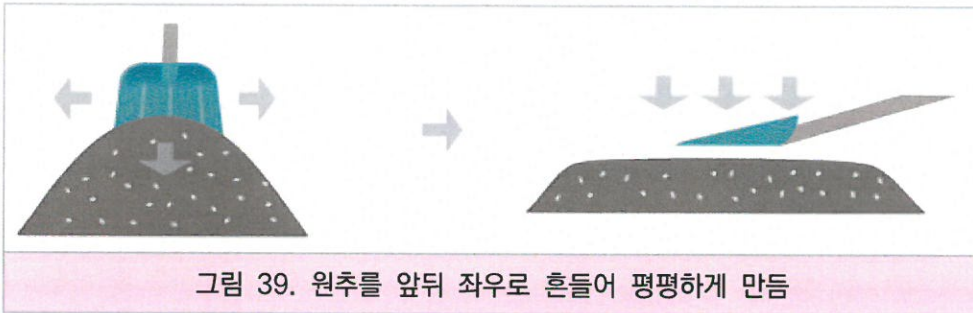
① 채취된 시료를 깨끗한 평면에서 원추형으로 쌓아 올림(그림 37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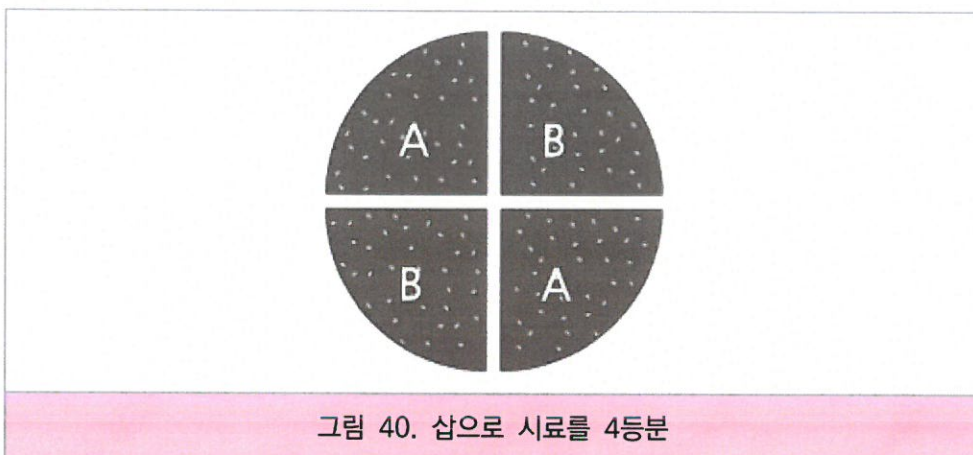
② ①의 원추를 평평하게 하여, 위치를 바꿔 ①과 같이 조작하여 2~3회 반복(그림 38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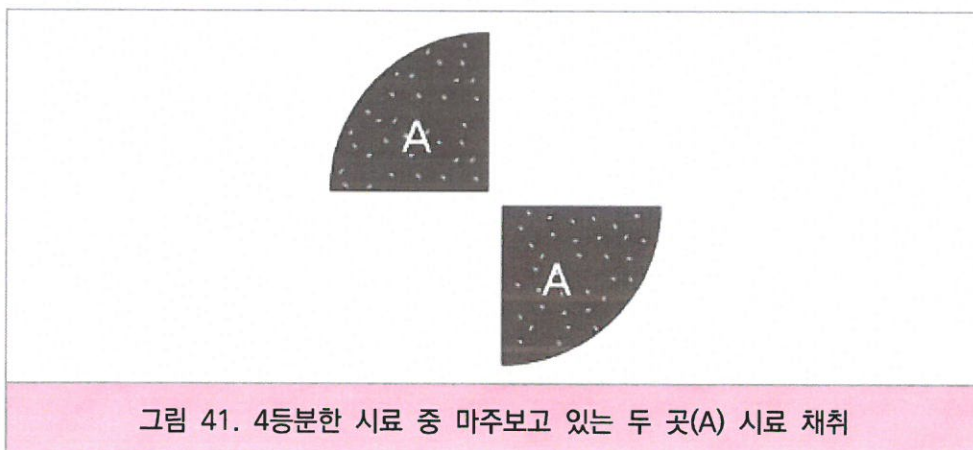
- ③ 원추 정점에 삽을 꽂고 앞뒤 좌우로 흔들어 높이를 낮추고 수직으로 눌러내려 평평하게 만들고(그림 39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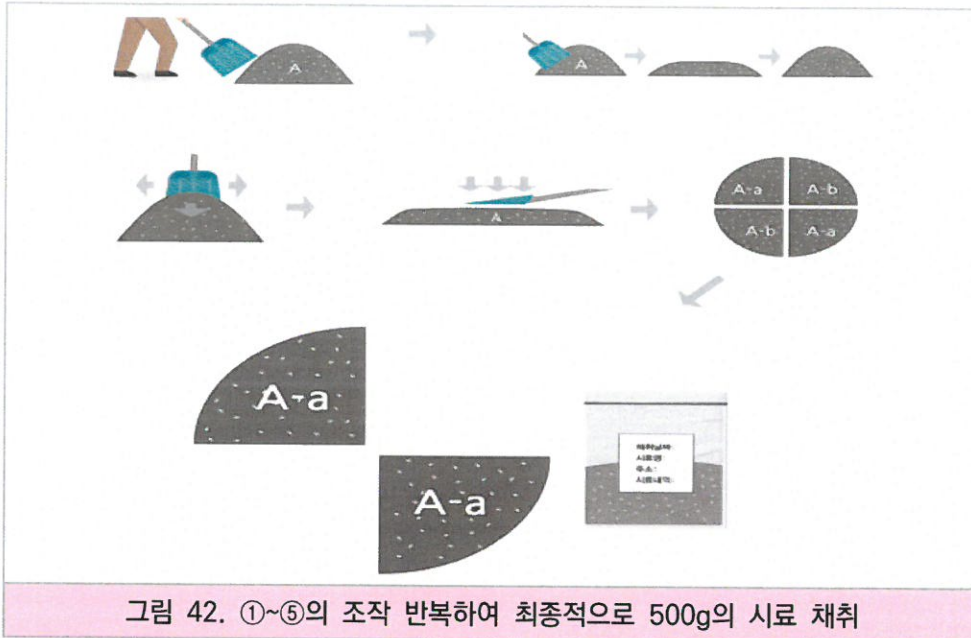
- ④ 삽을 이용해 ③의 시료를 4등분하고(그림 40)



- ⑤ 4등분한 시료에서 마주보고 있는 시료 두 곳(A)만 취하고 다른 두 곳(B)은 버리고(그림 41)



- ⑥ ⑤에서 채취한 시료(A)를 다시 ①~⑤의 조작을 반복하여 최종적으로 500g의 시료를 채취(그림 42)



나. 시료검사의뢰

- 채취한 500g의 시료를 비닐봉지에 넣고, 퇴비 성분검사 위탁서 (별지 제2호 서식)를 작성 동봉(그림 43)하여 농업기술센터 또는 시료검사기관에 의뢰
- 검사기관으로부터 퇴비 성분검사 결과서(별지 제3호 서식)를 받아 측정 또는 검사한 날부터 3년간 보관

※ 농촌진흥청 농사로 농자재 비료 시료채취 참조(<https://www.nongsaro.go.kr>)



그림 43. 채취한 시료 비닐봉지에 넣는 장면